

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

1. 2급신청자, 미응시자, 불합격자 서류

졸업 예정자 (학생)	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(2급신청자) &	졸업증명서 1부	- 원본만 제출가능 -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※ 관련근거: 한사협 공문 참조요망
		성적증명서 1부	- 원본만 제출가능 -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<u>단,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(필수10과목, 선택4과목)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</u>
	1급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	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	- 2010년도 입·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- 실습지도자/실습기관/실습지도교수 날인(서명)여부 확인요망 - 확인서 발급일자(실습기관/실습지도교수) 기재여부 확인요망

2. 1급 합격예정자 추가 서류 없음

졸업예정(학생) 중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 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(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)

▶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<1급 자격증이 교부>됩니다.